

정서적 학대 및 방임 판단 준거 연구

황옥경¹, 구은미^{2*}, 박지민³, 송미령⁴

¹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²동의대학교 보육과정상담학과,
³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⁴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Study on the Judgment Emotional Abuse and Neglect

Ock-Kyeung Hwang¹, Eun-Mi Koo^{2*}, Ji-Min Park³, Mi-Ryoung Song⁴

¹Dept. of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²Dept. of Child Care & Family Counseling, Dong-Eui University

³Dept. of American Law,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⁴Office of Medical Education,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과정에서 판단의 준거 범주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 범주를 구성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판단하기 요인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 안을 구성하였고, 판단 준거 안에 관해 전문가 21명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HP 분석을 이용하여 판단 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 8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학대의 판단 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결과는 '결과의 심각성'(0.230), '행위의 위험성'(0.192), '지속성'(0.134), '반복성'(0.130), '의도성'(0.125), '신고 이력'(0.078), '아동의 연령'(0.070), '행위 유형'(0.041)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판단 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결과의 심각성'(0.248), '행위의 위험성'(0.189), '지속성'(0.124), '반복성'(0.120), '의도성'(0.105), '아동의 연령'(0.091), '신고 이력'(0.066), '행위 유형'(0.058)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8개 판단 준거를 설정하여 준거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와 방임 판단 시,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judgment in the process of judg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e criteria for judg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was composed by constructing the criteria for judg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n the factors that judge child abuse. A pairwise comparison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21 academic and field experts on the criteria for judg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e data surveyed by experts' opinions were used to deriv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riteria for judgment using AHP analysis.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eight criteria for determin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revealed the follow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riteria for judging emotional abuse are 'severity of consequences' (0.230), 'risk of behavior' (0.192), 'persistence' (0.134), 'repetition' (0.130), 'intentionality' (0.125), 'Reporting History' (0.078), 'Children's Age' (0.070), and 'Action Type' (0.041).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riterion for judging neglect was 'the severity of the outcome' (0.248), 'the risk of action' (0.189), 'persistence' (0.124), 'repetition' (0.120), 'intentional' (0.105), 'Children's age' (0.091), 'reporting history' (0.066), and 'action type' (0.058). The eight criteria for judg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were set, and a method of giving points according to the criteria was suggested. Through this,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determin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Keywords : Analytic Hierarchy Process, Judgment Criteria, Emotional Abuse, Neglect, Criteria

본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일부분을 발췌 수정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Eun-Mi Koo(Dong-Eui Univ.)

email: keunmi@deu.ac.kr

Received May 4, 2021

Revised June 3,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사례라는 데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던진 충격이 더욱 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고,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동의 사망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피학대 아동들은 보호자가 음식을 주지 않아 굶주리는 극도의 방임 상태였거나, 아동을 특정 공간에 고립시켜 외부와 접촉할 수 없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견뎌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전체 사례 중 정서적 학대가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른 학대 유형과 중복 학대로 분류할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전체 학대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방임은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10.6%에 이른다. 아동학대 방임 사례에서 부모가 행위자인 경우는 85.3%이다. 아동의 사망을 유발한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동방임이었다[1].

정서적 학대와 아동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막강하다. 사실 정서적 학대는 모든 유형의 학대나 방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난다. 신체적 학대의 흔적은 사라지지만, 그와 함께 듣는 메시지들은 더 오래 간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 이 두 유형의 아동학대는 심리적 위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알아차리는 인식능력을 상실시킨다[17]. 대인관계 역량의 발달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학대 후유증이 있다[17,18].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빈번한 발생에 비하여 이들 학대 유형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혼욕과 가장 많이 혼동되고 있다 발달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과 혼욕 행동 간의 경계의 모호함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언제라도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14]. 정서적 학대와 방임 행위로 의심이 가더라도 혼욕이었다고 항변할 경우,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근거와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15]. 최근 몇 년 동안 아동혼욕과 아동학대, 특히 혼욕과 정서적 학대, 그리고 아동방임 간의 경계와 판단기준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우리나라의 양육 문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먹이 가정을 위한 취약한 돌봄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막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15,16].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기반은 ‘아동

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초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지만,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은 범죄구성요건으로서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2], 방임행위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유기행위와 구별되는 처벌유형으로서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의 포괄성이 혼욕과 구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범죄행위 판단의 어려움이 있다[14]. 이렇듯, 정서적 학대와 아동방임의 아동복지적 관점과 사법적 판단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구체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아동학대의 어떤 행위가 이들 정의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개입되어 이 정의에 들어맞는 행위의 객관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검사 및 판사 등 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한 연구[19]에 의하면,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과 달리,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해서는 인식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는 비율이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은 행위’(84.3~85.2%)가 가장 높았고,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59.3~66.7%),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로 부른 행위’(45.1~59.3%),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은 행위’(24.1~41.2%),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11.8~20.4%)가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20]. 방임에 관한 조사 결과는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는 행위’(72.5~75.5%)가 가장 높았고,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한 행위’(66.7~70.4%),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한 행위’(49.0~50.9%),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행위’(43.4~45.1%),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는 행위’(13.0~13.7%)의 순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서학대와 방임 사례를 보는 시각과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정서적 학대와 방임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국가에서도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정의하고 판단 기준에 대한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그 정의와 판단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3-6].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아동보호 체계의 역사가 길고 잘 발달한 영미권 국가에서도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인지하고 필요한 정책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더 왔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 세간의 시선을 끄는 여러 사건이 미디어로 소개되고,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에 비견할 만한 지속하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며 최근 몇 년간 학계와 정책 영역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8].

최근 영미권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법률과 판례에서 판단 기준으로 '의도성', '결과의 심각성', '지속성'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2015년 중대범죄법 66조에 의해 수정된 1933년 아동청소년법 1(1)과 1(2)에 규정된 아동 학대(child cruelty) 및 방임의 정의를 살펴보면, 심각한 상해를 입어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중상 해를 입히려는 한 범죄로 기소하는데 있어서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폭행죄로 기소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아동 학대/방임죄는 그 행위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우에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영국의 아동청소년법에 의거하여 양형위원회(The Sentencing Council)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아동 학대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아동이 입은 해와 범죄자의 잘못 정도에 따라 형이 결정되는데, 아동이 입은 해에는 심리적, 발달상 또는 정서적 해도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아동학대 방지 및 치유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은 아동학대 및 방임을 "죽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해, 성적 학대나 착취(111조에 정의된 성적 학대를 포함)를 가져오거나 심각한 해의 즉각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부모 또는 양육자의 최근의 행위 및 부작위"로 정의한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의 행위를 주로 보는 주의 정서적 학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 주에서는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에 "부당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 그리고/또는 만성적이거나 되풀이되는 조롱하기, 비하하기, 경멸적인 말하기, 또는 악담 퍼붓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학대를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이 상당히 손상되도록 하거나 혹은 손상될 가능성을 유발할 것 같은 고의적인 행위 또는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서적 상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나이, 아동이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 신체적 상처를 입은 신체 부위, 여러 상처가 있는지 여부, 외상의 성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적(willful)"이라는 것을 상해라는 결과를 의도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를 의도 했는지를 판단한다. 이렇듯 영미권의 경

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판단하기 위해, 의도성, 아동의 연령, 결과의 심각성, 지속성 등이 하나의 판단 증거 범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7고단36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결 기준을 보면,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1.구체적인 사안에서 유형력 및 강제력의 행사 정도, 2.그 배경 및 목적,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 3.훈육행위가 감정에 치우치거나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4.행위의 반복성 및 비난가능성, ⑤ 피해아동의 나이, 지능수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사건 발생 후 피해아동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15]. 또한,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등을 내용을 고찰한 선행연구[9, 20, 21]에서는 아동학대 판단 기준 변수로 피해 정도, 아동의 나이, 가해자 전과 유무, 가해자의 계획성, 훈육 목적을 고려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피해 정도는 행위의 위험성과 발생한 결과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가해자의 전과 유무는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에 비해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하며, 계획성은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을 학대하고자 하는 계획 하에서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피해 규모에서 나이를 고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나이 자체를 독립적인 요소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가해자의 동기 혹은 고의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훈육 목적이라는 요소를 대체하여 가해자가 학대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어 행위 책임을 감경시키는 요소로 고려된 것이다[9]. 이 외에도 우리나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법원 판결 기준을 조사한 연구[20-22]에서 판례의 양형 기준으로 아동의 연령, 아동의 자기보호능력 정도, 아동의 의사, 피고인의 상황, 피고인의 잔인성, 피고인의 반성정도, 피고인이 보호자로서의 책임성, 이전 범죄경력 정도, 피고인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및 능력, 향후 자녀 보호와 양육의 의지정도, 훈육의 지 및 의도 여부, 피고인의 의도성, 재범가능성, 동거여부, 학대의 심각성, 아동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국내의 판단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는 '의도성', '아동의 나

이, ‘결과의 심각성’, ‘지속성’, ‘가해자의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요소와 함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하위 행위 유형과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판단을 하는데 고려하는 준거 변수로 ‘아동의 연령’, ‘행위 유형’,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 ‘신고 이력’ 총 8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에 대해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여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도구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 범주는 아동 학대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9, 10, 16, 20]와 국내외 판례[20-22] 등의 Table 1의 내용을 가져왔으며, 본 연구진은 이전 범죄 이력보다는 아동학대 신고 이력을 판단 준거로 포함하였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하위 행동 유형을 포함하였다.

Table 1. Review of literature on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udgment criteria

Judgment criteria	S. J. Kwon et. al.(2018)	S. W. Lee (2018)	K. E. Lee (2015)	Y. I. Jang, J. M. Park (2016)
	Child Abuse Assessment	Korean Court's Decisions		US Court's Decisions
Child's age	0		0	0
The dangers of action	0	0	0	0
The severity of the outcome	0	0	0	0
Persistence		0		0
Repeatability	0		0	
Behavior type				
Intentionality	0		0	0
Report history	criminal history		criminal history	criminal history

이에 본 연구진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준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8개의 판단준거는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심각성(강도)’, ‘지속성’, ‘반복성’, ‘행위 유형’, ‘의도성’, ‘신고 이력’, ‘아동의 연령’이었다.

Table 2.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udgment criteria

Spec.	Judgment criteria	Contents
Emotional Abuse	Child's age	The age of the child in the emotional abuse behavior pattern
	The dangers of action	Evaluating the degree to which the behaviors corresponding to the emotional abuse behavior type are dangerous
	The severity of the outcome	Evaluating to what extent the predicted and serious consequences of behaviors that fall under the emotional abuse behavior pattern will result in the child
	Persistence	Evaluating how long the behavior corresponding to the emotional abuse behavior pattern has persisted
	Repeatability	Evaluating the extent to which behaviors corresponding to the emotional abuse behavior type occurred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Behavior type	Evaluating what behaviors correspond to emotional abuse behavior patterns
	Intentionality	The intention to harm the child, intentionality, and intention to engage in the behavior itself that causes emotional abuse
	Report history	Assess whether you have a history of child-related crime
Neglect	Child's age	The age of the child in the neglect behavior pattern
	The dangers of action	Evaluating the degree to which the behaviors corresponding to the neglect behavior type are dangerous
	The severity of the outcome	Evaluating to what extent the predicted and serious consequences of behaviors that fall under the neglect behavior pattern will result in the child
	Persistence	Evaluating how long the behavior corresponding to the neglect behavior pattern has persisted
	Repeatability	Evaluating the extent to which behaviors corresponding to the neglect behavior type occurred over a certain period of time
	Behavior type	Evaluating what behaviors correspond to neglect behavior patterns
	Intentionality	The intention to harm the child, intentionality, and intention to engage in the behavior itself that causes neglect
	Report history	Assess whether you have a history of child-related crime

2.2 조사를 위한 패널

조사를 위한 패널은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진정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패널의 선정하여 참여시키는 것이다[11].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적합한 조사대상은 아동학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패널 조사 연구에서 패널 수는 보통 15이상이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하여[12],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21인을 패널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패널의 배경변인 분포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Participation Panel

Spec.	Career	Field of Work	Incumbent Institution
Researchers and experts related to child welfare (8 people)	15~31 years	Social welfare, Infants and Children	Academia, Research
Child abuse-related medical experts (4 persons)	15~37 years	Medical	Academia, Practice field
Judicial expert on child abuse (3 persons)	4~17 years	Judicial and Police administration	Lawyer, Academia, Research, Public institution/Public official
Employees of child abuse-related institutions (6 persons)	14~36 years	Social welfare, Infants and Children	Practice field, Public institution/Public official

2.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정서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 범주는 아동 학대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9, 10] 및 국내외 판례, 그리고 해당 사례 등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진이 8개의 판단 준거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8개 판단 준거에 대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사법, 경찰행정, 의료, 아동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에게 판단 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쌍대 비교방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10일 실시하였다.

정서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부여하기 위해,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활용하였다. AHP-O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쌍대 비교를 통한 요소들의 판단결과를 활용하기 전에 참여자의 의사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며, 타당성의 검증은 의사결정의 판단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비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 값을 산출하였다. CI는 일관성이 클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Satty는 일관성비율이 10% 이내인 경우에만 서수적 순위 무리가 없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제시하였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CI 값이 10% 이상인지 확인하고, 판단 준거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3.1 정서적 학대 판단 준거에 대한 AHP 분석

정서적 학대의 판단 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면(Table 3), ‘결과의 심각성’(0.230), ‘행위의 위험성’(0.192), ‘지속성’(0.134), ‘반복성’(0.130), ‘의도성’(0.125), ‘신고 이력’(0.078), ‘아동의 연령’(0.070), ‘행위 유형’(0.041)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은 0.006으로 CR=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학대 판단 준거에 있어, 8개 준거 중에서 ‘결과의 심각성’은 23%로 가장 많은 중요도(가중치)를 두었으며, 그 다음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19.2%로 높은 중요도(가중치)를 나타냈다.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은 각각 13.4%, 13.0%, 12.5%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이력’, ‘아동의 연령’, ‘행위 유형’은 각각 7.8%, 4.1%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의 판단 준거 중 결과의 심각성, 행위 위험성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판단 시 이외 다른 준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거마다 가중치를 정하기에는 개별 사례마다 특수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렵게 보인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의 판단 준거에 대한 8개 준거는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AHP를 통해 도출된 정서적 학대의 판단 준거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활용하여 변환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점수화하였다. 정서적 학대의 판단 준거 8개에 대한 변환점수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fo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Emotional Abuse

Spec.	Importance	Priority	Conversion score
The severity of the outcome	0.230	1	23
The dangers of action	0.192	2	19
Persistence	0.134	3	13
Repeatability	0.130	4	13
Intentionality	0.125	5	13
Report history	0.078	6	8
Child's age	0.070	7	7
Behavior type	0.041	8	4
CR / Score	0.006		100

3.2 방임 판단 준거에 대한 AHP 분석

방임의 판단 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살펴보면, ‘결과의 심각성’(0.248), ‘행위의 위험성’(0.189), ‘지속성’(0.124), ‘반복성’(0.120), ‘의도성’(0.105), ‘아동의 연령’(0.091), ‘신고 이력’(0.066), ‘행위 유형’(0.058)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했으며, CR값은 0.006으로 CR=0.1보다 낮아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임의 8개 판단 준거에 대한 중요도는 ‘결과의 심각성’이 24.8%로 가장 높았고, ‘행위의 위험성’,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은 각각 18.9%, 12.4%, 12.0%, 10.5%의 중요도(가중치)를 나타냈으며, ‘아동의 연령’, ‘신고 이력’, ‘행동 유형’은 각각 9.1%, 6.6%, 5.8%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나타냈다. 아동방임의 판단 준거 중 결과의 심각성 및 행위의 위험성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외에도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 아동의 연령, 신고 이력, 행동 유형을 판단 준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Table 5.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ies for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Neglect

Spec.	Importance	Priority	Conversion score
The severity of the outcome	0.248	1	25
The dangers of action	0.189	2	19
Persistence	0.124	3	12
Repeatability	0.120	4	12
Intentionality	0.105	5	11
Child's age	0.091	6	9
Report history	0.066	7	7
Behavior type	0.058	8	6
CR / Score	0.006		100

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와 같이 방임의 8개 판단 준거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AHP를 통해 도출된 방임의 8개 판단 준거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활용하여 변환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점수화하였다. 방임의 8개 판단 준거에 대한 변환점수 확인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4. 결론

본 연구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과정에서 판단의 준거 범주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과정에서 판단의 준거가 될 8개 범주를 확인하였다. 8개의 판단 준거는 ‘아동의 연령’, ‘행위 유형’, ‘행위의 위험성’, ‘결과의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 ‘신고 전력’이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확인과 판단과정에서 이 8개 판단 준거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 전문가들은 8개의 판단 준거 중에서 ‘결과의 심각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 준거로 인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행위의 위험성’이었다.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판단 준거이었다. 상대적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한 판단 준거는 ‘신고 이력’, ‘아동의 연령’, ‘행위 유형’이었다.

방임의 경우에, 전문가들은 정서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8개 판단 준거 중에서 ‘결과의 심각성’을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행위의 위험성’, ‘지속성’, ‘반복성’, ‘의도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연령’, ‘신고 전력’, ‘행동유형’은 다른 판단 준거에 비하여 상대적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경우 모두 전문가들은 ‘결과의 심각성’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어도 모든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과정에서 이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개 항목의 판단 준거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으나,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행위 유형 부분에 대한 스크리닝을 해 볼 필요도 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 범주 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방임의 판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신고 이력이나 행동 유형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였다. 이는 방임의 경

우, 영유아기에 만성적으로 방임에 노출될 경우 더욱 심각한 결과[23]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한 준거로 고려될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8개 판단 준거를 설정하여 준거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 준거의 행동범주 및 하위행동에 따른 판단 점수를 작성할 수 있고, 어떤 평가 기준에서 위험성이 낮은지 높은지 확인하여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8 개의 요소 중 어느 요소가 더 위협하고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지만, 8개 판단 준거의 중요도 순위가 모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준거는 아니다. 특정 정서적 학대와 방임 사례에 따라서 8개 판단 준거의 중요도와 우선 고려사항은 달라질 수가 있다. 개별 정서적 학대와 방임 의심 사례에 대하여 8개의 판단 준거를 토대로 평가하면, 형사적 조치가 필요한 사례일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례일지, 학대 사실이 전혀 없는 사례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학대적인 양육인지, 양육적인 훈육인지의 양육과 훈육의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 판단 시,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판단 준거에만 체크가 되더라도 아동학대의 위험 정도가 높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인식된 '아동의 연령'의 경우 0세 아이가 홀로 방치되어 있었을 경우, 연령변인이 다른 판단 준거에 비해서 상대적 중요도가 낮더라도 이 학대 사례의 경우는 연령변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상대적 중요성의 평가 결과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판단 준거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 개의 요소 중 어느 요소가 더 위협하고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가 있지만, 8개 판단 준거의 중요도 순위가 모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판단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준거는 아니다. 특정 정서적 학대와 방임 사례에 따라서 8개 판단 준거의 중요도와 우선 고려사항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피해아동의 상황에 따라 중요한 준거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학대유형에 따라서도 판단 준거 별 중요도의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대유형별 판단 준거의 중요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hild Abuse & Neglect Korea 2018, pp26.
- [2] S. K. Kim, "Special Feature - Articles : A Critical Review of the new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The Yonsei Law Review*, Vol.24, No.2, pp.201-230, 2014.
- [3] F. Ainsworth, P. Hansen, "The Munro Review of Child Protection: Final Report - A Child-Centred System: A Review and Commentary," *Children Australia*, vol. 36, (3), pp. 164-168, 2011.
DOI: <http://dx.doi.org/10.1375/icas.36.3.164>.
- [4] A. M. Naughton, S. A. Maguire, M. K. Mann, R. C. Lumb, V. Tempest, S. Gracias, A. M. Kemp, "Emotional,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Features Indicative of Neglect or Emotional Abuse in Preschool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JAMA Pediatr.* vol. 167, no 8, pp. 769-775, 2013.
DOI: <http://dx.doi.org/10.1001/jamapediatrics.2013.192>
- [5] H. Ward, R. Brown, D. Westlack, *Safeguarding Babies and Very Young Children from Abuse and Neglect*,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12, PP.41-45.
- [6] R. Hibbard, J. Barlow, H. MacMillan,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Committee on Child Abuse and Neglect &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Child Maltreatment and Violence Committee, "Psychological maltreatment", *Pediatrics*, vol. 130, no 2, pp. 372-378, 2012.
DOI: <https://doi.org/10.1542/peds.2012-2269>
- [7] D. Glaser, V. Prior, *Predict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Early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Chichester, UK: Wiley, 2002, pp.57-70.
- [8] S. Oon, *Emotional Abuse Is Inadequately Defined and Measured*. The Imprint, 2015[cited 2015 July 16], Available From: <https://imprintnews.org/featured/emotional-abuse-is-inadequately-defined-and-measured/10864>. (accessed Oct. 20, 2020)
- [9] S. J. Kwon, K. J. Lee, H. K. Kim,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hild Abuse Assessment Tool",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Vol.59, No.0, pp.276-336, 2018.
- [10] S. Y. Kim, "A Study on Exploring Multi-type Maltreatment Experiences, Parental and Family Environm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0, No.4, pp583-608, 2016.
- [11] D. Y. Song, Y. H. Lee,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0, No.3, pp.115-135, 2008.
- [12] Y. J. Lee, Y. H. Lee,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1, No.4, pp.277-296, 2009.

- [13] T. L. Saaty,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48, No.1, pp. 9-26, 1990.
DOI: [https://doi.org/10.1016/0377-2217\(90\)90057-1](https://doi.org/10.1016/0377-2217(90)90057-1)
- [14] M. S. Song, O. K. Hwang, “Parental perceptions of emotional abuse and parenting conflicts”.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Rights of the Child*. pp. 88-107, 2016.
- [15] H. Y. Jang, “Emotional abuse against a child in Child Welfare Act - focusing on the protectors act of urging the child sexually offended by her/his family member to forgive the offender -”, *Social security Law Review* Vol.72, No.2, pp. 103-137. 2018.
- [16] Y. J. Park, C. K. Han, “A case study on child abuse defendend as discipline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69, No.0, pp. 29-55. 2020.
- [17] R. E. Norman, M. Byambaa, R. De, A. Butchart, J. Scott, T. Vos, “The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of Child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Med*, Vol.9, No.11, 2012.
DOI: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1349>
- [18] H. M. Yoon,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child abuse to psychosocia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8, No, 1, pp.173~206. 2017.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7.48.1.173>
- [19] C. R. Nho, I. J. Chung, J. S. Chun, J. H. Kim. “The study on the perception on child abuse among police officers, prosecutors, and judges” *Social Sciences Research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Vol.27 No. 0, pp.77~106. 2012.
- [20] S. W. Lee. “Judicial Judgment on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Vol. 53. No. 0, pp.77~106. 2018.
- [21] K. E. Lee, “The legal Action on Parent Perpetrator of Child Abus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31, No.3, pp. 183~202, 2015.
- [22] Y. I. Jang, J. M. Park, “A Review of Issues on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rough the Analysis of Court’s Decision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0, No.4. pp.655-689. 2016.
- [23] De Bellis, M. D. “Developmental traumatology: The psychobiology of neglect”. *Child Maltreatment*, Vol.10, pp.150-172. 2005.

황 옥 경(Ock-Kyeong Hwang)

[정회원]



- 199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2002년 8월 : 영국 Dundee Univ. Dept. of Social Work. M.Phil 이수
- 2001년 9월 ~ 현재 :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권리, 보육, 아동복지

구 은 미(Eun-Mi Koo)

[정회원]



- 2004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문학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동의대학교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 2019년 1월 ~ 현재 : 부산광역시 보육정책위원

<관심분야>

아동복지, 보육

박 지 민(Ji Min Park)

[정회원]



- 2010년 5월 :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Austin (Juris Doctor)
- 2015년 1월 ~ 2020년 12월 : 아동권리학회 해외교류이사
- 2012년 3월 ~ 현재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부교수
- 2021년 1월 ~ 현재 : 아동권리학회 법제심의 이사

<관심분야>

아동권리, 아동 참여, 법

송 미 령(Mi-Ryoung Song)

[정회원]



- 201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12년 1월 ~ 2018년 8월 : 한국보육진흥원 팀장
- 2018년 10월 ~ 2020년 6월 : 한양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2020년 8월 ~ 현재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연구강사

〈관심분야〉

아동복지, 교육평가